

모세 없는 신명기?

— 신명기 12장 분석을 통한 원신명기 재고 —

배선복*

1. 들어가는 말

마틴 노트(M. Noth)가 신명기부터 열왕기상하까지를 아우르는 신명기 역사(서)라는 개념과 이론을 주창한 이후부터,¹⁾ 신명기 역사는 노트의 주장에 동의하는지에 관계없이, 구약성경 형성사를 연구할 때 빼놓지 않고 고려해야 하는 주요한 이론이 되었다. 신명기 역사 개념은 전통적인 오경 단위나 당시 학계에서 지배적이던 육경 단위를 벗어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이론이었다.²⁾ 이 이론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 수정, 발전되는 과정에서,³⁾

* University of Chicago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구약학 시간 강사. rough2000@stu.ac.kr.

- 1) M. Noth,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SOTSup 15 (Sheffield: JSOT Press, 1981), 특히 16-17.
- 2) 참조, T. 뢰머, 『신명기역사서 연구: 사회학적, 역사적, 문학적 개론』, 김경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46-48.
- 3)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에 관한 연구사는 다음 연구들을 참조하라. 최종원, “신명기 연구의 어제와 오늘”, 『기독교사상』 727(2019), 20-30; 이은우,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29(2008), 67-86; 이은우, “신명기와 전기 예언서의 관계에 관한 최근의 연구 동향”, 『성서마당』 85(2008), 65-78; 허신욱, “신명기 연구 동향”, 『성서마당』 115(2015), 60-73; T. 뢰머, 『신명기역사서 연구: 사회학적, 역사적, 문학적 개론』, 35-77; T. 뢰머, “신명기계 역사”, T. 뢰머 외, 『구약성경입문 1』, 김진택 역 (경기도: 수원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9), 445-458; M. A. O'Brie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Hypothesis: A Reassessment*, OBO 9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3-23; T. Römer, “The Book of Deuteronomy”, S. L. McKenzie and M. P. Graham, eds., *The History of Israel's Traditions: The Heritage of Martin Noth*, JSOTSup 18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178-212; T. Römer and A. de Pury, “Deuteronomistic Historiography (DH): History of Research and Debated

“드 베테 가설”⁴⁾에 답하려고 했던 신명기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신명기 사가들의 흔적을 걷어내고 남은, 보다 일관된 문학 단위로 정의되는, 소위 원신명기(*Urdeuteronomium*)에 관한 문제로 범위를 좁혔다. 주로 편집 비평에 입각한 신명기 역사 연구들이 원신명기를 이전 세대의 문서설을 고수하던 학자들(예를 들어, 벨하우젠이나 노트)에 비해 훨씬 적은 본문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써 연구 대상이 축소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문제의 복잡성은 줄어들지 않았다. 여전히 신명기의 연대와 역사적 배경에 관한 견해는 다양하다. 현재 원신명기라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본문 형성사 이론들이 그렇듯이, 원신명기의 존재는 가설이며, 이 가설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견해들이 존재한다.

원신명기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본문 중 하나는 신명기 12장이다. 신명기 12장이 명령하는 ‘성소 중앙화’는 신명기 법전에 있는 많은 법의 기초를 이룬다. 특히 신명기 법전이 언약 법전을 자료로 삼으며 수정하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에게 신명기 법전이 언약 법전을 수정하는 이유는 성소 중앙화를 가정한 상황에서 언약 법전의 많은 법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신명기 역사서에 속하는 열왕기상하에서도 성소 중앙화는 왕들과 백성의 신앙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래서 원신명기를 언급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신명기 12장의 적어도 일부를 원신명기에 포함하고 있다.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신명기 12장은 단일한 문학적 단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학자들이 신명기 12장의 형성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각자가 추론하는 원신명기의 성격, 범위, 연대가 달라진다.

본 연구는 토마스 뢰머(T. Römer)를 비롯해, 여러 학자가 견지하는 신명기 12장 편집에 관한 지배적 견해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한계와 약점을 지적한다. 그 후, 시르온 샤벨(S. Chavel)의 독특한 분석과 그 강점을 소개한다. 샤벨 자신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의 12장 분석은 현재 원신명기 연구에 중요한 함의가 있다. 현재 많은 연구가, 원신명기가 고대 근동 조약 전통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모세와 출애굽-광야를 가정하는 내러티브적인 내용

Issues”, T. Römer, A. de Pury, and J.-D. Macchi, eds., *Israel Constructs its History: Deuteronomistic Historiography in Recent Research*, JSOTSup 30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24-141.

4) 이 가설에 따르면, 왕하 22장에 나오는 율법책이 신명기이며, 신명기는 요시아 시대에 성소 중앙화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채홍식, “계약법전과 원신명기”, 『구약논단』 9(2000), 63-89가 드 베테 가설을 아직 널리 받아들이며, 논의를 전개했던 20세기 말의 학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본 연구가 대화하는 보다 최근의 학자들은 드 베테만큼 원신명기에 많은 본문을 할애하지 않는다.

을 제외해야 하고, 원신명기의 범위도 매우 좁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신명기 12장 분석을 통해, 내러티브 요소 없이 야훼나 무명의 화자가 실제 청자에게 명령하는 원신명기는 없으며, 최근 학계의 동향과는 달리 생각보다 많은 본문이 원신명기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릴 것이다.

2. 방법론

본 연구는 신명기 12장을 문학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현대 성서학에서 ‘문학 분석’이라는 표현은 영어의 ‘literary analysis’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연구 방법을 가리킬 수 있다. 먼저, 성경을 일반적인 문학 작품을 해석하듯이 현대 문학 이론을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가리킬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성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구전이 아닌 텍스트로 되어있는 본문을 형식, 문체, 문법, 내용 등에 따라 분석하여 같은 저자(들이)나 편집자(들)에 의해 기록된 자료나 편집층을 나누는 작업을 뜻한다. 본 연구는 문학 분석이라는 용어를 이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한다.⁵⁾

성서학에서 문학 비평(literary criticism), 문서설(Documentary Hypothesis), 자료 비평(source criticism)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연구가 사용하는 문학 분석을 더 엄밀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문서설의 문서는 현재의 오경을 형성한 네 개의 자료(소위 J, E, P, D)에 한정되고, 자료 비평이 의미하는 자료나 문서는 엄밀히 말해, 독립적인(stand-alone) 문학 단위를 의미한다. 즉 문서설이 말하는 문서 안에도 자료 비평적으로는 여러 자료나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⁶⁾ 이 두 용어에 비해 문학 분석 혹은 문학 비평은, 자료 혹은 문서의 범위나 독립성보다는 연구 대상의 성격에 초점을 맞춘 용어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학 분석의 연구 대상은 쓰인 텍스트 그 자체이다. 텍스트 밖에 있는 요소(예를 들어, 추정된 구전 전통, 고고학적 증거와 본문을 통해 알려진 역사적 사건, 재구성된 역사적 배경 등)를 배제하고, 텍스트 안에 있는 요소(형식, 문체, 문법, 내용 등)만을 고려하여, 텍스

5) 첫 번째 의미의 문학 분석으로 수행된 연구는 이영미, “제의 중앙화와 세속화를 통한 개혁: 신명기 12장의 수사비평적 읽기”, 『신학사상』 143(2008), 65-96을 참조하라.

6) ‘문서’라는 용어를 문서설의 문서에 국한하지 않고, 조금 더 넓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K. Schmid, “Has European Scholarship Abandoned the Documentary Hypothesis? Some Reminders on Its History and Remarks on Its Current Status”, T. B. Dozeman, K. Schmid, and B. J. Schwartz, eds., *The Pentateuch: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urrent Research*, FAT 78 (Tübingen: Mohr Siebeck, 2011), 17-30을 참고하라.

트의 발전 단계를 살핀다. 텍스트 밖의 요소들에 대한 고려는 문학 분석 이후에 고려할 작업으로 본다.⁷⁾ 자료 비평이든 편집 비평이든, 이러한 원칙하에 이루어진 연구는 문학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 분석(즉, 문학 비평)을 메타 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한 본문을 특정한 역사적 맥락과 연결하는 일은 최소화하고, 문학 분석 결과가 제공하는 의의를 찾는 일을 우선할 것이다. 편집층을 동일하게 나누고도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과 연결하는 일이 구약 연구에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를 고려할 때, 본문 안에 저작 연대와 배경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요소가 특별히 없다면, 고대 문헌에 쓰인 본문을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 위치시킬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물론 이는 역사적 증거의 유용성이나 통시적 방법론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도 샤벨의 문학 분석의 도움을 받을 때, 여러 문학 분석적 방법 중, 내재적 성서 해석(inner biblical exegesis)이라는 통시적 방법을 사용한다. 내재적 성서 해석이란, 성경 본문들 사이에 언어 표현과 중심 사상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두 본문 사이의 의존성의 여부와 의존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본문의 발전 단계를 발견하는 통시적 작업이다.⁸⁾ 본 연구가 경계하는 것은, 문학 분석적 증거와 다른 역사적 증거들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텍스트와 텍스트 밖의 경계를 허물고, 텍스트 밖 세상에 대한 선입견이 아무런 통제 없이 텍스트 해석을 지배하는 것이다.⁹⁾

본 연구의 문학 분석은 많은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신명기 12장을 네 개의 문학 단위로 분류한다. 여기서 문학 단위란, 단일한 저자 혹은 편집자가 일관된 생각을 담은 본문을 뜻한다. 이 단계에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선입견에 입각해 각 문학 단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전히 문학 분석이 각 문학 단위의 관계에 관한 우선적인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다. 다른 역사적 증거에 대한 고려와 연대 설정은 문학 분석 이후의 작업으로 남겨둘 것이다.

7) 참조, T. B. Dozeman, K. Schmid, and B. J. Schwartz, "Introduction", T. B. Dozeman, K. Schmid, and B. J. Schwartz, eds., *The Pentateuch: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urrent Research*, FAT 78 (Tübingen: Mohr Siebeck, 2011), XI-XVIII (특히 XI-XII).

8) 내재적 성서 해석 방법에 관한 고전적인 연구는 M.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1985)을 참조하라. B. M. Levinson, *Deuteronomy and the Hermeneutics of Legal Innov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23-52는 이 방법을 신 12장에 적용하는 교과서적인 예이다. 샤벨(S. Chavel)은 내재적 성서 해석 방법을 신 12장 내의 문학 단위들에 적용하여, 신 12장의 내적 편집사를 재구성하는 데 사용한다.

9) 참조, B. D. Sommer, "Dating Pentateuchal Texts and the Perils of Pseudo-Historicism", T. B. Dozeman, K. Schmid, and B. J. Schwartz, eds., *The Pentateuch: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urrent Research*, FAT 78 (Tübingen: Mohr Siebeck, 2011), 85-108.

3. 성소 중앙화 양식 중심 신명기 12장 분석의 한계

신명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만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명령이 6번 반복된다(신 12:5, 11, 14, 18, 21, 26). 이 문구를 포함하는 부분의 내용과 강조점을 기준으로 12:1-28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12:2-7 혹은 11:31-12:7¹⁰); 12:8-12; 12:13-19; 12:20-28). 어떤 경우에는 이 반복들이 서로 상관없이 독립된 단위처럼 제시되거나, 내용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신 12:15와 12:20-21), 대부분 학자들이 이 네 부분을 단일 저자에 의한 기록이라고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12:2-7은 모든 제물을 여호와가 택하실 한 곳으로만 가져와야 하는 이유를 이스라엘이 쫓아내야 할 가나안 민족이 예배드리던 방식대로 야훼를 섬기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12:8-12는 12:2-7을 모르거나 적어도 관심 없다는 듯, 성소 중앙화가 필요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고, 제사를 더 이상 그들이 현재 광야에서 하던 대로 각기 소전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다. 또한 12:1을 신명기 12장의 성소 중앙화 법이나 신명기 법전 전체의 시작으로 보지 않고, 11:31부터 시작되는 12:2-7의 도입부로만 보는 학자들은 이 두 문학 단위 사이의 차이점을 추가로 관찰한다. 즉, 11:31-12:7이 성소 중앙화를 당장 시행되어야 할 긴급한 사안으로 보는 것에 반해, 12:8-12는 대적들을 평정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까지 유예 기간을 둔다.¹¹) 비슷한 불일치가 12:13-19와 12:20-28 사이에도 발견된다. 후자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져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쉽게 올 수 없는 거리에 사는 사람들만(신 12:20-21)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도록 허락한다. 이에 반해 12:13-19는, 예물은 여호와가 택하실 곳에 가서 드려야 하지만, 고기를 먹고 싶으면 “각 성에서” 도축을 해도 된다고 말한다(15절). “각 성에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שַׁעֲרֵי כָּל־עָרַיִם라는 표현은 “너의 모든 도시(직역: 성문)에서” 혹은 “네가 사는 도시 중 어디든지”라는 의미

10) 신 11:31-12:1을 포함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A. Rofé, “The Strata of the Law About the Centralization of Worship in Deuteronomy and the History of the Deuteronomic Movement”, *Deuteronomy: Issues and Interpretation* (Edinburgh: T&T Clark, 2002), 98-99.

11) A. Rofé, “The Strata of the Law About the Centralization of Worship in Deuteronomy and the History of the Deuteronomic Movement”, 99-100; S. Chavel, “The Literary Development of Deuteronomy 12: Between Religious Ideal and Social Reality”, T. B. Dozeman, K. Schmid, and B. J. Schwartz, eds., *The Pentateuch: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urrent Research*, FAT 78 (Tübingen: Mohr Siebeck, 2011), 307-308; R. D. Nelson, *Deuteronomy: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2), 136, 141, 150.

를 담고 있다.¹²⁾ 다시 말하면 12:20-21과 달리 12:15는 중앙 성소로부터의 거리와 상관없이, 심지어 중앙 성소가 있는 도시 안에서도, 성소에 제물로 드려지지 않은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12:20-28이 제사를 성소로 가져오지 않아도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경우를 거리로 제한한 것과 분명히 다르다.

되머는 12:20-28을 제외하고 남은 12:1-18에 나타난 세 개의 문학 단위 (12:2-7, 8-12, 13-18)로부터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서 편집의 세 단계를 구분한 후, 각각의 단계를 이스라엘 역사의 서로 다른 시기에 위치시켰다.¹³⁾ 되머는 그가 생각하는 성소 중앙화 양식의 발전 단계에 따라, 이 세 개의 문학 단위의 순서를 정했다. 다음은 되머의 주장을 도표화한 것이다.¹⁴⁾

<표 1> 성소 중앙화 양식 비교(신 12:14, 11, 5)¹⁵⁾

14	במקום אשר יבחר יהוה באחד שבטיך “야훼가 너의 지파들 중 하나를 선택하실 그 장소에서”
11	והיה המקום אשר יבחר יהוה אלהיכם בו לשכן שמו שם “야훼 너희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기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¹⁶⁾ 선택하실 그 장소로”
5	אל המקום אשר יבחר יהוה אלהיכם מכל שבטיכם לשום את שמו שם לשכנו ¹⁷⁾ “야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지파들 중 자기 이름을 거기에 두시기 위해, 즉 그것을 머무르게 하기 위해 선택하실 그 장소로”

12) P. 주옹, T. 무라오카, 『주옹-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개정본 (서울: 기혼, 2022), 655 (§139f).

13) T. 되머, 『신명기역사서 연구: 사회적, 역사적, 문학적 개론』, 93-106; T. C. Römer, “Cult Centralization in Deuteronomy 12: Between Deuteronomistic History and Pentateuch”, E. Otto and R. Achenbach eds., *Das Deuteronomium zwischen Pentateuch und Deuteronomistischem Geschichtswerk*, FRLANT 20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168-175.

14) 모든 표에 나오는 한글 번역은 직역에 가까운 사역이다. 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개역개정』이 히브리어 본문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역개정』은 14절의 이인칭 단수 대명사를 복수로 번역했고, 마소라 본문이 ׀ןשכנ ׀שׁ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표시하지 않으며, 거의 같은 히브리어 표현을 달리 번역하기도 한다 (예: 25절, 28절).

15) <표 1>에서 신 12:5, 11, 14 모두에 반복되는 것은 물결밑줄로 표시하였고, 5절과 14절에서만 반복되는 것은 밑줄 한 줄로, 5절과 11절에서만 반복되는 것은 밑줄 두 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16) “머무르게 하기 위해”라는 번역은 전치사 ל에 붙은 히브리어 동사 ׀ןשכנ의 피엘 부정사 연계를 직역한 것이다. 이것이 단지 “두다”라는 뜻인지, “머무르게 하다, 살게 하다”라는

위의 표에서 보듯, 12:5는 11절과 14절의 특징적인 단어나 표현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뒤머는 5절이 11절과 14절의 양식을 합친 것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그는, 5절을 가장 후대에 추가된 본문으로, 가장 간단한 14절을 가장 초기에 형성된 본문이라고 간주하였다.¹⁸⁾ 따라서, 14절이 속한 12:13-18이 가장 처음의 편집층(신명기의 첫 번째 판본, 즉 원신명기)이며, 11절과 5절이 속한 12:8-12와 12:2-7은 12:13-18에 각각 순서대로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뒤머만 성소 중앙화 양식의 발전 모델로 신명기 12장을 통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¹⁹⁾ 또 12:13-18을 가장 오래된 본문으로 보는 것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이기도 하다.²⁰⁾ 하지만, 성소 중앙화 양식의 발전

뜻인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소위 이름 신학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지만, 양 진영을 대표하는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S. D. McBride, “The Deuteronomic Name Theology”,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69); S. L. Richter, *The Deuteronomistic History and the Name Theology: l̥šakkēn š̥mō šām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BZAW 318 (Berlin: Walter de Gruyter, 2002). 피엘 וְשֵׁם יְיָ가 소위 이름 신학을 반영하는지의 여부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여기서는 단지,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וְשֵׁם 동사와 피엘 וְשֵׁם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 굳이 직역을 하였다.

- 17) 마소라 본문은 וְשֵׁם לְכָל בְּרִיתָא를 칼 부정사 연계형에 3인칭 남성 단수 소유격 대명사 어미가 붙은 것처럼 모음을 찍었지만, 원래의 자음 본문은 피엘 부정사 연계형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S. L. Richter, *The Deuteronomistic History and the Name Theology: l̥šakkēn š̥mō šām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46-47.
- 18) T. 뒤머, 『신명기역사서 연구: 사회학적, 역사적, 문학적 개론』, 95-96; T. C. Römer, “Cult Centralization in Deuteronomy 12: Between Deuteronomistic History and Pentateuch”, 169 n. 5.
- 19) 예를 들어 T. N. D. Mettinger, *The Dethronement of Sabaoth: Studies in the Shem and Kabod Theologies*, F. H. Cryer, trans., ConBOT 18 (Lund: Gleerup, 1982), 54-56; 참조, S. L. Richter, *The Deuteronomistic History and the Name Theology: l̥šakkēn š̥mō šām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58-61; 오택현, “신명기 역사에 나타난 예루살렘 선택구절 연구”, 『신학과 목회』 46(2016), 95-115.
- 20) 예를 들어, M. 로제, “신명기”, T. 뒤머 외, 『구약성경입문 1』, 김건태 역 (경기도: 수원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9), 426; G. von Rad, *Deuteronomy: A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1966), 92; A. D. H. Mayes, *Deuteronomy*, NCB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79), 222; R. D. Nelson, *Deuteronomy: A Commentary*, 150; N. MacDonald, “Issues in the Dating of Deuteronomy: A Response to Juha Pakkala”, *ZAW* 122 (2010), 433-434. 신 12:13-19가 가장 오래된 편집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뒤머(T. Römer)와 달리 어떤 이들은 신 12:20-28의 일부도 12:13-19와 같은 편집층에 속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E. Otto, “Vom Rechtsbruch zur Sünde: Priesterliche Interpretationen des Rechts”, L. A. Schökel, M. Beintker, and I. Baldermann, eds., *Sünde und Gericht*, JBTh 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4), 35; E. Otto, *Das Deuteronomium: Politische Theologie und Rechtsreform in Juda und Assyrien*, BZAW 284 (Berlin: Walter de Gruyter, 1999), 342; J. Pakkala, “The Date of the Oldest Edition of Deuteronomy”, *ZAW* 121 (2009), 396-397; J. Pakkala, “Deuteronomy and 1-2 Kings in the Redaction of the Pentateuch and Former Prophets”, K. Schmid and R. F. Person, Jr., eds., *Deuteronomy in the Pentateuch, Hexateuch*,

모델은 12장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12:14와 같은 편집층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12:18과, 12:20-28에 나오는 성소 중앙화 양식을 뒤머가 타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발전 모델에서 제외한 것이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지 의문이다. 다음은 위의 <표 1>에 누락된 성소 중앙화 양식의 사례를 추가하여, 표를 완성한 것이다.

<표 2> 성소 중앙화 양식 비교(신 12장 전체)²¹⁾

14	<p>במקום אשר יבחר יהוה באחד שבטיך</p> <p>“야훼가 <u>너의</u> 지파들 중 하나를 <u>선택하실 그 장소에서</u>”</p>
18	<p>במקום אשר יבחר יהוה אלהיך</p> <p>“야훼 <u>너의</u> 하나님을 <u>선택하실 그 장소로</u>”</p>
11	<p>והיה המקום אשר יבחר יהוה אלהיכם בו לשכון שמו שם</p> <p>“야훼 <u>너희의</u> 하나님이 <u>자기</u> 이름을 거기에 <u>머무르게 하기 위해 선택하실 그 장소로</u>”</p>
5	<p>אל המקום אשר יבחר יהוה אלהיכם מכל שבטיכם לשוים</p> <p>את שמו שם לשכנו</p> <p>“야훼 <u>너희의</u> 하나님이 <u>너희</u> 모든 지파들 중 <u>자기</u> 이름을 <u>거기에</u> 두시기 위해, 즉 그것을 <u>머무르게 하기 위해 선택하실 그 장소로</u>”</p>
21	<p>המקום אשר יבחר יהוה אלהיך לשוים שמו שם</p> <p>“야훼 <u>너의</u> 하나님이 <u>자기</u> 이름을 거기에 <u>두시기 위해 선택하실 그 장소</u>”</p>
26	<p>אל המקום אשר יבחר יהוה</p> <p>“야훼가 <u>선택하실 그 장소로</u>”</p>

and the Deuteronomistic History (Tübingen: Mohr Siebeck, 2012), 137; B. M. Levinson, *Deuteronomy and the Hermeneutics of Legal Innovation*, 39-43. B. Halpern, “The Centralization Formula in Deuteronomy”, *VT* 31 (1981), 20-38은 신 12:13-19가 가장 이른 본문이라는 것 외에, 나머지 본문들의 순서를 정하는 것을 신중히 거절한다. 참조, U. Rütterswörden, “The Place of Deuteronomy in the Formation of the Pentateuch”, J. S. Baden and J. Stackert,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Pentateu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282-283.

21) 여섯 개의 성전 중앙화 양식에 모두 걸쳐 있는 것은 물결밑줄로 표시하였다. 히브리어 표현 לשכון은 점선밑줄, 그것과 동의어인 לשוים은 파선밑줄로 표시하였다. “야훼” 다음에 동격으로 나오는 “하나님”은 이중물결 표시를 하고 שמו שם(자기 이름을 거기에)이라는 표현에는 밑줄을 두 번 그었다. 또 이인칭 대명사 중 단수는 회색염영, 복수는 이탤릭체로 표시하였다.

신명기 12:20-28에 나오는 두 성소 중앙화 양식을 고려하면, 반복되는 표현을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더 이상 <표 1>에서처럼 간단하게 할 수 없고, 세분화해야 한다.

성소 중앙화 양식이 신명기 12장의 문학 단위들의 순서를 매기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표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신명기 12:21은 12:11과 같은 의미의 서로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이인칭 대명사의 수가 다르다는 점을 빼면, 형식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거의 똑같다. 성소 중앙화 양식이 신명기 12장의 편집층을 나누는 데 중요한 기준이라면, 12:20-28이 12:8-12와 같은 편집층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성소 중앙화 양식을 기준으로 삼는 이들조차 이에 관해 부정적으로 답변할 것이다. 예를 들어, 뢰머는 신명기 12:20-28은 성전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고 12:8-12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부정적으로 답할 것이다.²²⁾ 성소 중앙화 양식이 흡사하더라도, 어떤 이들에게는 대명사의 문법적 수 변화(*Numeruswechsel*)가 나타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12:11이 이인칭 복수 소유격 대명사를 가지고 있고, 12:21은 이인칭 단수 소유격 대명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20-28은 12:8-12와 원천적으로 다른 편집층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²³⁾ 이처럼 성소 중앙화 양식에 의존하는 학자들은, 문학 분석에 역사적 배경(에 관한 선입견)이나 다른 요소를 끌어들이 수 밖에 없다.

또 신명기 12:21은 12:18의 모든 요소를 어순까지 똑같이 포함하며, 대명사도 이인칭 남성 단수로 동일하다. 유일한 차이는 12:21이 ‘이름을 두다’라는 표현만 12:18에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12:13-18이 12:20-28보다 앞서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12:18이 12:21을 가져오며 “이름을 두다”라는 표현만 삭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12:20-28에 속하는 두 개의 성소 중앙화 양식은 이 점에 있어 하나의 예시를 제공한다.

22) T. 뢰머, 『신명기역사서 연구: 사회학적, 역사적, 문학적 개론』, 100; T. C. Römer, “Cult Centralization in Deuteronomy 12: Between Deuteronomistic History and Pentateuch”, 171.

23) 예를 들어, E. Otto, *Das Deuteronomium: Politische Theologie und Rechtsreform in Juda und Assyrien*, 341-342; R. G. Kratz, *The Composition of the Narrative Books of the Old Testament*, J. Bowden, trans. (London: T&T Clark, 2005), 117; U. Rüterwörden, “The Place of Deuteronomy in the Formation of the Pentateuch”, 282-283. 하지만 대명사의 수 변화는 편집층을 구분하는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 특히 T. 뢰머, 『신명기역사서 연구: 사회학적, 역사적, 문학적 개론』, 115-117의 관찰대로, 편집층을 가정하기 어려운 신 12:1 내에 이인칭 단수와 복수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보라. 참조, A. Rofé, “The Strata of the Law About the Centralization of Worship in Deuteronomy and the History of the Deuteronomic Movement”, 97-98; A. D. H. Mayes, *Deuteronomy*, 36-37; T. Veijola, “Wahrheit und Intoleranz nach Deuteronomium 13: Lothar Peritt zum 65. Geburtstag”, *ZThK* 92 (1995), 292.

12:26의 양식은 같은 문학 단위에 속하는 12:21에서 “이름을 두다”라는 표현을 빼 짧은 양식이다. 아마 같은 문학 단위에 속한 12:21에 더 긴 양식이 나왔기 때문에, 긴 양식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다수의 의견과 달리 12:13-18이 12:20-28보다 후대의 본문이라면,²⁴⁾ 12:20-28에 이미 나오는 긴 양식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²⁵⁾ 짧은 본문이 우선한다는 본문 비평의 오래된 명제(*lectio brevior potior*)는 그 자체로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닐뿐더러, 여기서 적용될 수도 없다. 만약 가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양식을 찾는다면 신명기 12:26이 가장 초기의 본문이 되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되머는 이렇게 신명기 12장 내 각 문학 단위의 순서를 정한 후, 가장 이른 신명기 12:13-18은 주전 7세기, 그 다음 12:8-12는 바벨론 포로기, 마지막 12:2-7은 페르시아 시기의 시대적 상황과 연결한다. 자신이 연구 범위에서 제외된 12:20-28은 12:2-7과 같은 편집층에 위치시켰다. 되머가 가장 이른 시기의 본문으로 보고 원신명기의 일부라고²⁶⁾ 주장하는 신명기 12:13-18을 주전 7세기에 위치시키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타당하다. 12:13-18과 13장의 일부를 원신명기에 포함하면서, 그는 주전 7세기 아시리아 조약 문서(에살하돈 종주 조약)를 신명기 13장의 자료로 인정하기 때문이다.²⁷⁾ 하지만 그가 성소 중앙화 양식의 차이를 기준으로 매긴 순서에 따라, 12장의 나머지 문학 단위들은 필연적으로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의 편집층이 되었다. 그러나 연대를 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성서 안팎에서 찾을 수 없는 나머지 문학 단위들을 각각의 역사적 상황에 배정하는 방식이 다소 주관적이라는 것은,

24) 이 부분을 아래에서 자세히 주장할 것이다.

25) 물론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 이를 신학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련된, 조금 더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가정할 수도 있지만, 이것조차 확실한 것은 아니며,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이름 신학을 다루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26) 비슷한 분석을 하는 다른 학자 중, 신 12:20-28을 신 12:13-19과 같은 층에 위치시키거나, 신 12:13-19 바로 다음이자 신 12:8-12 이전에 위치시키기도 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학자는 위의 각주 20번에서 언급하였다. 후자에 관해서는 R. Albertz,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J. Bowden, trans., 2 vols.,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1:351 n. 69; U. Rütterswörden, “The Place of Deuteronomy in the Formation of the Pentateuch”, 283을 참조하라.

27) T. 되머, 『신명기역사서 연구: 사회학적, 역사적, 문학적 개론』, 117-122, 특히 118-120. 신 13장을 원신명기에서 배제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이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이후에 주장할 것이다. 신 13장의 자료가 되는 조약 전통의 출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학계의 합의가 없다. 이것을 논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지만, 신 12:13-19와 신 13장의 일부가 모두 원신명기라고 인정하고, 연대를 특정할 수 있는 외부 문서를 신 13장의 자료로 여기는 되머가 신 12:13-19의 연대를, 연대를 특정할 수 있는 신 13장의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과정과 방식은, 그의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방법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학자들이 본문의 연대를 저마다의 이유로 다르게 추정하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렉산더 로페(A. Rofé)는 신명기 12:8-12가 주전 7세기(특히 요시야 시대)보다 앞선 솔로몬 통치 시기라고 보았다.²⁸⁾ 유하 파칼라(J. Pakkala)는, 원신명기에 왕권이나 국가 제도에 관련된 법 조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신명기의 배경이 적어도 주전 586년, 유다 멸망 후라고 주장한다.²⁹⁾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과 실제 역사적 배경을 연결할 때 흔히 나타나는 주관성과 편향성은 일부 학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가진 문서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 문서들의 발전 단계가 복잡하고, 고대 역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여전히 불충분하기에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문학적 인 본문 분석이 최대한 정확해야 하고, 본문 분석이 내용을 역사적 상황과 연결하는 것에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한 이후에도, 본문 분석의 결과에 역사적 배경을 특정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때로는 불가능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4. 신명기 12장의 편집 순서에 관한 샤벨의 견해

성소 중앙화 양식에 따른 신명기 12장의 문학 단위 순서가 정확하지 않고, 방법론적으로 엄밀하지 않다면, 대안이 있는가? 성소 중앙화 양식이 아니더라도 신명기 12장의 네 문학 단위들은 다른 반복되는 어구들을 제법 포함하고 있다. 신명기 12장의 분석은 이런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샤벨이 이러한 방식으로 더 합리적인 분석을 제시한다. 그의 연구는 원신명기의 범위와 성격에 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하지만 샤벨의 분석은 뒤편이나 그와 비슷한 방식의 지배적인 분석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견해와 비교해 매우 독창적이기 때문에, 자세

28) A. Rofé, “The Strata of the Law About the Centralization of Worship in Deuteronomy and the History of the Deuteronomic Movement”, 100.

29) J. Pakkala, “The Date of the Oldest Edition of Deuteronomy”, 388-401. 파칼라(J. Pakkala)가 자신의 스승 티모 베이올라(T. Veijola)의 원신명기를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학자들의 재구성 과 달리 베이올라가 제시한 원신명기의 장점인 모세와 출애굽-광야 내러티브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N. MacDonald, “Issues in the Dating of Deuteronomy: A Response to Juha Pakkala”, 431-435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효과적으로 파칼라를 반박하였다. 그러나 파칼라는 자신이 동의하는 베이올라의 원신명기가 모세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희박한 언급은 원신명기의 배경에 관해 알려주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J. Pakkala, “The Dating of Deuteronomy: A Response to Nathan MacDonald”, *ZAW* 123 (2011), 432, 434. 참조, T. 베이올라, 『베이올라 신명기』, 원진희 역 (서울: 동연, 2010), 3-4, 223-224, 472-484.

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샤벨은 12:2-28에서 구분되는 네 문학 단위를 대명사 수의 변화나 성소 중앙화 양식에 따라 분류하지 않는다. 그는 양식의 차이와 반복 과잉, 그리고 내용상의 불일치를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그의 분석이 제공하는 중요한 공헌은, 그가 신명기 12:20-28과 12:13-19에서 관찰한 두 가지 사항에 있다. 먼저 신명기 12:20-28에서 도입부를 담당하는 첫 두 절(12:20, 21)은 양식적으로 접속사 **כי**로 시작하는 조건절, 혹은 시간절을 반복한다. 그리고 20절과 21절 모두, 각각 중앙 성소로부터 먼 거리에 사는 사람이 중앙 성소로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가축을 도살하여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³⁰⁾ 이러한 형식과 내용이 반복되는 구절의 병렬만으로도 편집의 흔적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20절과 21절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경우에 있어 미세한 불일치를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20절과 21절이 같은 저자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¹⁾ 샤벨은 결론부 역시 두 개가 발견된다는 관찰로 자신의 의견을 보완한다. 『개역개정』의 번역은 히브리어로 거의 흡사한 구문을 25절과 28절에서 서로 다르게 번역하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25절과 28절은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³²⁾

<표 3> 신명기 12:25와 12:28 비교³³⁾

25	<p style="text-align: center;"><u>למען ייטב לך ולבניך אחרריך כי תעשה הישר בעיני יהוה</u> “<u>너가 야훼 보시기에 의를 행할 때(행하므로), 너와 너 이후의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하여</u>”</p>
28	<p style="text-align: center;"><u>למען ייטב לך ולבניך אחרריך עד עולם כי תעשה הטוב והישר בעיני יהוה אלהיך</u> “<u>너가 야훼 너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의를 행할 때(행하므로), 너와 너 이후의 후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 위하여</u>”</p>

두 개의 도입부가 병렬되어 나왔던 것과 달리, 이 결론부가 신명기

30) S. Chavel, “The Literary Development of Deuteronomy 12: Between Religious Ideal and Social Reality”, 313.

31) Ibid., 321.

32) Ibid., 313-314.

33) 밑줄로 표시된 반복을 보면, 28절은 25절과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조, S. Chavel, “The Literary Development of Deuteronomy 12: Between Religious Ideal and Social Reality”, 314; J. Stackert, *Deuteronomy and the Pentateuch*, AYBR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22), 24-25.

12:22-24와 12:26-27 다음에 각각 나오고 있기 때문에, 25절은 12:22-24, 28절은 12:26-27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³⁴⁾ 특히 12:22-24가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12:25가 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벨의 추론을 더 공고하게 만든다.

신명기 12:20-28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본문이 결합하여 있다는 관찰은, 본문의 내용과 단어 사용에 근거해, 두 개의 도입부(신 12:20, 21)를 각각 12:22-25와 12:26-28에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 선명해진다. 12:22-25와 12:26-28은 서로 간에 연관성이 크지 않고, 각각이 뚜렷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 12:22-25는 고기를 먹어도, 절대 피는 먹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12:26-28은 고기를 각자의 지방에서 먹어도, 제물은 꼭 중앙 성소로 가져와야 함을, 즉 아무 데서나 제사하고 제물을 먹지 않아야 함을 명령한다. 12:20과 12:22-25에서 공통으로 반복되거나 눈에 띄는 단어는 לֶאֱמֹל(먹다)과 בָּשָׂר(고기)이다. 신명기 12:21과 12:26-28에는 דָּבַח(도축하다, 제물을 잡다³⁵⁾), שְׂקָרָה(성물), שֶׁרֶץ(서원제), עֹלָה(번제), זֶבַח(제물) 등, 제사와 도축에 관련된 용어들이 계속 등장한다. 이로써 신명기 12:20, 22-25와 12:21, 26-28 각각이 앞선 문학 단위들(신 12:2-7, 8-12, 13-19) 못지않게 일관된 하나의 문학 단위임이 드러났다.³⁶⁾ 물론, 12:27b에서도 피 처리에 관해 나오지만, 여기서는 집에서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피를 처리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12:27b의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12:26-28 전체에서 제사를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의 주제에 대해 부수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신명기 12:20-28이 12:13-19보다 앞선다는 관찰은 사벨의 두 번째, 더 중요한 공헌이다. 첫째, 12:13-19는 12:20-28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둘째,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어디서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면(12:13-19), 논리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만 제물이 아닌 고기를 먹도록(12:20-28) 다시 허락할 이유가 없다. 이외에도 그는 12:13-19가 12:20-28보다 늦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제시한다.³⁷⁾

34) S. Chavel, “The Literary Development of Deuteronomy 12: Between Religious Ideal and Social Reality”, 314.

35) 참조, B. M. Levinson, *Deuteronomy and the Hermeneutics of Legal Innovation*, 38. 원래 이 동사는 신 12:21의 자료가 되는 출 20:24의 경우를 포함하여, 주로 제사와 관련되어 제물을 잡을 때 사용되던 단어이지만, 신 12:21에서는 전략적으로 세속적 도축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되었다.

36) S. Chavel, “The Literary Development of Deuteronomy 12: Between Religious Ideal and Social Reality”, 315-316.

37) *Ibid.*, 317.

무엇보다, 샤벨의 분석이 함축하고 있지만, 그가 크게 강조하지 않는 부분에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신명기 12:13-19는 12:20, 22-25와 12:21, 26-28의 내용뿐만 아니라, 11:31-12:7과 12:8-12(혹은 12:2-7, 8-12)의 내용과 언어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⁸⁾ 11:31-12:12에 포함된 두 문학 단위에 강력한 성소 중앙화에 대한 명령은 있지만, 세속적 도축과 육식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만약 가장 포괄적인 12:13-19가 한 편집자에 의한 단일한 문학 단위라면, 12:13-19의 포괄적 내용에서 11:31-12:7과 12:8-12가 세속적 도축을 제외한 성소 중앙화만을 각각 꺼내서 발전시켰다고 보는 것보다, 11:31-12:7과 12:8-12에 이미 존재하던 요소들을 12:13-19가 포괄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신명기 12:20-28이 지금의 모습으로 결합하기 전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본문이었음을 상기하면, 이 관점은 더욱 강화된다. 12:13-19가 12:20-28에 의존할 때, 12:20, 22-25와 12:21, 26-28이 현재 본문과 같이 결합하여 있었는지, 각각 따로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³⁹⁾ 만약 결합하여 있었다고 해도 더 포괄적인 12:13-19가 현재 상태의 12:20-28에 의존하여 현재의 본문을 형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12:20-28이 12:13-19보다 늦다면, 아직 합쳐지기 전에 시간 차이를 두고 생긴 12:20, 22-25와 12:21, 26-28이, 전자는 피 식용 금지만을, 후자는 이 중앙 성소로부터 먼 거리에서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요소만을 12:13-19로부터 각각 가져왔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또한 신명기 12:13-19가 가장 이른 시기의 본문이라면, 후대의 본문인 11:32-12:7, 12:8-12, 12:20-28이 각각 12:13-19의 세속적 도축과 육식에 관대한 법을 더 엄격하게 바꾸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신명기 법전이 한때 현실에 적용되었다고 보는 학자들에게는 오히려, 중앙 성소에서 먼 데 있는 이들까지 세속적 육식을 금지했다가, 현실에 맞춰 조금씩 풀어주었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⁴⁰⁾ 더구나 12:13-19까지 포로기 이후로 보는 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12:13-19 이후의 문학 단위를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에 위치시키는, 대부분 학자들은 11:32-12:12를 잘 설명할 수 없다. 12:8-12가 바벨론 포로기 디아스포라, 12:2-7이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통치

38) Ibid., 318-319.

39) Ibid., 318. 신 12:15-18의 순서가 결합한 상태의 신 12:20-26의 순서와 일치하기 때문에, 아마 신 12:13-19는 이미 결합한 상태의 신 12:20-28에 의존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40) 참조, Ibid., 317, 326.

하의 제2 성전 근처 유대 지역을 전제한다면, 도대체 왜 세속적 도축과 육식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약점을 인지한 퇴머는 12:20-27을 12:2-7과 같은 문학 단위로 보지만,⁴¹⁾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위에서 주장하였다. 12:20-28을 12:13-19와 같은 편집층으로 보거나, 12:13-19 바로 다음 편집층으로 보는 학자들도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12:2-12에 왜 세속적 도축과 육식에 관한 언급이 없는지, 왜 후대의 본문인 12:2-12가 가장 엄격한 명령을 담고 있는지, 여전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12:20-21이 12:13에 의해 무효화 되거나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은 편집층으로 보거나 12:20-28이 12:13-19보다 늦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בן לך השמ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로 시작해서 같은 문구로 끝나는 교차대구 구조(*chiasmus*)와 같은 고대 저작/편집 기술에 대한 고려는 12:13-19가 가장 후대의 본문임을 지지한다. 12:13-18이 가장 이른 시기의 본문이라고 생각하는 퇴머는 레위인에 대한 언급 때문에 12:19를 후대의 첨가물로 본다.⁴²⁾ 하지만 12:18이 이미 레위인을 언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12:19를 분리할 필요는 없다. 버나드 M. 레빈슨(B. M. Levinson)과 리처드 D. 넬슨(R. D. Nelson)이 보여 주듯이, 신명기 12:13-19가 교차대구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בן לך השמר**의 반복은 12:13-19의 저자가 전후의 문학 단위와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설치한 문학적 장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⁴³⁾ 즉, 12:13-19 전체가 단일한 저자/편집자의 본문일 것이다. 이 교차대구적인 12:13-19의 구조는, 이 추가된 본문이 기존 본문들의 앞이나 뒤가 아니라 중간에 와 있는 상태를 잘 설명한다. 12:13-19의 저자는 어떤 이유로든 12:13-19를 원래 인접했던 12:2-12와 12:20-28 사이에 삽입하기 위해, 12:13-19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는, 신 12:13-19의 출처가 인접한 다른 본문들과 다를 가능성을 암시한다.

샤벨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12:13-19를 12장의 마지막 문학 단위로 분석하는 논리가 12:2-12와 12:20-28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첫째, 논리적으로는 강력한 성소 중앙화 명령을 만든 이후에, 그것의 엄격함

41) T. 퇴머, 『신명기역사서 연구: 사회학적, 역사적, 문학적 개론』, 104; T. C. Römer, “Cult Centralization in Deuteronomy 12: Between Deuteronomistic History and Pentateuch”, 171.

42) T. 퇴머, 『신명기역사서 연구: 사회학적, 역사적, 문학적 개론』, 94 n. 26; T. Römer, “Cult Centralization in Deuteronomy 12: Between Deuteronomistic History and Pentateuch”, 169 n. 3.

43) 참조, B. M. Levinson, *Deuteronomy and the Hermeneutics of Legal Innovation*, 29-30; R. D. Nelson, *Deuteronomy: A Commentary*, 154; S. Chavel, “The Literary Development of Deuteronomy 12: Between Religious Ideal and Social Reality”, 320.

을 줄이고, 육식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그 반대보다 더 설득력 있다. 둘째, 내용 면에서도, 12:2-12의 강력한 성소 중앙화 이후에 생겼을 법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세속적 도축과 육식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더 그럴듯하다. 이러한 추론을 확장하면, 당장 더 엄격한 개혁을 촉구하는 12:2-7(혹은 11:31-12:7)이 시간상으로 여지를 조금 남겨두는 12:8-12의 법보다 논리적으로 더 앞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가 12:13-19를 가장 이른 시기의 본문이자 원신명기의 일부로 보고, 12:2-7을 가장 늦은 시기의 본문으로 보지만, 본 연구는 샤벨의 분석에 동의하며, 12:2-7, 8-12, 20-28, 13-19가 순서대로 각각 앞선 본문에 의존하며, 연속적으로 추가되었다고 본다.⁴⁴⁾

5. 원신명기에 대한 신명기 12장 문학 분석의 함의

샤벨은 신명기 12장을 분석하면서, 다른 연구들처럼 각각의 편집층을 구체적인 시대 상황에 대입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재구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문학 분석 결과(신명기 12장의 문학적 확장에 따라 추가되는 본문들이 성소 중앙화와 세속적 도축에 점점 더 관대해짐)를, 법률이 현실 관행에 따라 수정되는 현상으로 보았다. 즉, 사회를 변혁시키도록 고안된 성소 중앙화법이 실제 사회 상황에 도리어 적응하고 수정되어 갔다는 것이다.⁴⁵⁾ 하지만 샤벨은 텍스트가 반영한다고 여기는 당대 현실을, 당시 도축 관습에 대한 문헌적, 고고학적 증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가 제시한 사회적 상황은 상식에 입각한 추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의 문학 분석으로는 성소 중앙화와 세속적 도축에 관해 다른 의견을 가진 편집자 집단이 존재했다는 정도까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샤벨은 자신의 연구 결과가 신명기 구성이나 발전 단계와 관련하여 문학 분석적인 통찰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분석은 신명기 12장이 속했다고 여겨지는 소위 원신명기에 대한 문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 신명기 12:13-19와 12:20-28의 성소 중앙화는 출애굽기 20:24-26의 표현을 재사용하여 지방 성소를 반대하고, 이에 따라 원신명기의 자료에는 언약 법전이 포함된다는 것은, 최근 반대

44) S. Chavel, "The Literary Development of Deuteronomy 12: Between Religious Ideal and Social Reality", 304-305.

45) Ibid., 304-305, 326.

에 부딪히기는 했지만,⁴⁶⁾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이다. 그래서 보다 최근의 학자들은 성소 중앙화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아주 제한된 범들로 원신명기를 재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소 중앙화법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본문이라고 생각되는 12:13-18(혹은 12:13-28)만 원신명기로 인정한다. 하지만, 샤벨의 도움으로 재구성된 신명기 12장의 발전 단계를 받아들인다면, 12:13-28보다 앞서는 11:31(혹은 12:2)-12:12를 원신명기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 추론이다. 앞서 보여주었듯, 12:13-19와 12:20-28은 모두 11:31-12:12에 추가된 본문이기 때문이다. 12:13-19가 11:31-12:12보다 늦더라도, 신명기 12:13-19에 출애굽기 20:24-26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명기 12:13-19는 정의에 따라 여전히 원신명기이다. 그렇다면, 원신명기의 자료가 되는 신명기 11:31-12:12 역시 자명하게 원신명기에 속한다.⁴⁷⁾ 다음에 나열된 합의들은 11:31-12:7을 가장 앞선 본문으로, 12:13-19를 가장 늦은 본문으로 설정함으로써, 원신명기에 11:31-12:28 전체가 포함된다는 결론에 기인한다.

첫째, 모세의 목소리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야기 틀이 빠진 원신명기의 존재는 증거가 없다. 많은 연구가 모세와 광야라는 내러티브 맥락을 제외하고 야훼의 목소리나 혹은 알 수 없는 화자의 목소리가 성소 중앙화와 야훼에 대한 충성을 청자에게 직접 명령하는 아주 짧은 문서라고 본다.⁴⁸⁾ 하지만, 원신명기에 속하는, 심지어 그 기원을 원신명기 이

46) 예를 들어, C. Levin, *Fortschreibungen: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BZAW 316 (Berlin: Walter de Gruyter, 2003), 97-101은 출 20:24-26이 신 12장의 성소 중앙화 법에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7) 원신명기의 자료가 원신명기보다 먼저 작성되었다고 해도, 원신명기의 저자가 그 자료를 자신의 기록에 포함했다면, 그 자료가 원신명기 저자가 작성한 본문과 함께 원신명기 층에 속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경우, 신 12:2-12가 원신명기보다 앞서는 소위 전신명기(vordtn)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 12:2-12가 결국은 원신명기의 일부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원신명기 이전 단계에서 신 12:2-12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목적으로 존재했는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노버트 로퐁크(N. Lohfink)와 오토(E. Otto)가 자신들이 전신명기 본문으로 여기는 신 12:13-19에 대해 비슷한 주장을 펴는 것에 주목하라. N. Lohfink, "Fortschreibung? Zur Technik von Rechtsrevisionen im deuteronomischen Bereich, erörtert an Deuteronomium 12, Ex 21,2-11 und Dtn 15,12-18", T. Veijola, ed., *Das Deuteronomium und seine Querbeziehungen*, SESJ 6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139-142; E. Otto, *Das Deuteronomium: Politische Theologie und Rechtsreform in Juda und Assyrien*, 341-343.

48) E. Otto, *Das Deuteronomium im Pentateuch und Hexateuch: Studien zur Literaturgeschichte von Pentateuch und Hexateuch im Lichte des Deuteronomiumrahmens*, FAT 30 (Tübingen: Mohr Siebeck, 2000), 110-155, 특히 117; E. Otto, *Das Deuteronomium: Politische Theologie und Rechtsreform in Juda und Assyrien*, 32-90; G. Braulik, *The Theology of Deuteronomy: Collected Essays of Georg Braulik*, U. Lindblad, trans., BIBAL Collected Essays 2 (N. Richland Hills, TX: BIBAL Press, 1994), 186; G. Seitz,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n zum*

전으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신명기 12:2-7과 12:8-12는, 약속의 땅에는 현재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은 현재 광야에서(참조, 신명기 12:8의 “오늘 여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임을 분명히 언급한다. 또 12:8의 “우리(אֲנַחְנוּ)”라는 일인칭 복수 대명사는 원신명기의 화자가 야훼가 아니라 모세임을 드러낸다. 11:31-12:1을 12:2-7과 분리할 수 없다는 로페의 의견에 동의한다면,⁴⁹⁾ 11:31-32에서 일인칭 단수 화자와 야훼가 구별된다는 사실도 화자의 정체성을 모세라고 분명히 알려준다.

파칼라는 원신명기가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한 미완료태 *בְּחַבְּרָה*(선택하다)를 사용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원신명기의 포로기 저작 가능성을 지지한다고 보았다. 첫째, 원신명기가 흔히 생각되었던 포로기 이전에 작성되었다면, 미래 시제 사용은 이상한 일이다.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던 포로기 때는, ‘앞으로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지만, 성전이 계속해서 역할을 하고 있던 요시야 때는 이러한 미래 시제 표현이 당시 독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리라는 것이다. 둘째, 이 미래 시제는 출애굽 전승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나산 전승을 전제하고 있기에, 현재 재구성된 원신명기보다 더 자세한 내러티브 도입부가 필요하다.⁵⁰⁾ 본 연구의 관점에서는, 파칼라의 문제 제기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는, 파칼라의 문제 제기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이제 원신명기의 성소 중앙화법에 이미 모세 전승이 충분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내러티브 도입부의 상당 부분을 부수적이라고 배제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⁵¹⁾ 프랑크 크뤼제만(F. Crüsemann), 크리스토프 레빈(C. Levin), 제프리 스택커트(J. Stackert) 등도 모세의 목소

Deuteronomium (Stuttgart: Kohlhammer, 1971), 71; N. Lohfink, *Die Väter Israels im Deuteronomium: Mit einer Stellungnahme von Thomas Römer*, OBO 11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1), 102; R. G. Kratz, “The Headings of the Book of Deuteronomy”, K. Schmid and R. F. Person, Jr., eds., *Deuteronomy in the Pentateuch, Hexateuch, and the Deuteronomistic History*, FAT 2.56 (Tübingen: Mohr Siebeck, 2012), 39-41, 45-46; R. G. Kratz, *The Composition of the Narrative Books of the Old Testament*, 123-125; 마틴 로페, “신명기”, 422. 참조, W. S. Morrow, “The Arrangement of the Original Version of Deuteronomy According to Eckart Otto”, *ZABR* 25 (2019): 195-203.

49) A. Rofé, “The Strata of the Law About the Centralization of Worship in Deuteronomy and the History of the Deuteronomic Movement”, 98-99.

50) J. Pakkala, “The Date of the Oldest Edition of Deuteronomy”, 386, 특히 386 n. 29. R. G. Kratz, “The Headings of the Book of Deuteronomy”, 45-46도 미래 시제의 사용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내포한다고 보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는다.

51) N. MacDonald, “Issues in the Dating of Deuteronomy: A Response to Juha Pakkala”, 433도 비슷한 반론을 편다. J. Pakkala, “The Dating of Deuteronomy: A Response to Nathan MacDonald”, 434가 재반론을 펴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리와 광야 내러티브를 걷어내고 원신명기의 연대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는 연구들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한다.⁵²⁾ 신명기 내러티브와 신명기 법은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세와 관련된 전승들이 무조건 포로기 이후도 아니다.

둘째, 신명기 12:2-7이 원신명기에 포함됨으로써 신명기 13장이 원신명기의 일부라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신명기 13장의 유일신 강조 혹은 야훼에 대한 배타적 충성 요구가 성소 중앙화를 강조하는 원신명기의 기초와 맞지 않고 신명기 12장과 14장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킨다고 보고, 신명기 13장을 제외하려고 하였다. 특히 다른 신들(אלהים אחרים)에 대한 언급은 아주 늦은 신명기 사가적(이라고 간주되는)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신명기 13장을 원신명기에서 제외하였다.⁵³⁾ 여기에는 신명기 13장의 기본층과 같은 편집층인 신명기 12:2-7이 후대의 본문이라는 전제도 자리 잡고 있다.⁵⁴⁾ 그러나 이제 12:2-7이 원신명기에 속하고, 가나안 종교나 그와 비슷한 행위를 야훼에게 적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야훼에 대한 배타적 충성 맹세 요구가 원신명기에서 더이상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6. 나가는 말

본 연구는 먼저, 신명기 12장의 형성사를 재고하였다. 기존의 형성사는 소위 성소 중앙화법의 변화와 이인칭 대명사의 수 변화에 의존하여, 편집층을 나누고 편집 순서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기준 모두, 편집층과 편집 순서를 결정하기에 적합한 기준이 아니었다. 본 연구는 사벨을 따

52) F. Crüsemann, *The Torah: Theology and Social History of Old Testament Law*, A. W. Mahnke, trans. (Minneapolis: Fortress, 1996), 209 n. 43. C. Levin, *Re-Reading the Scriptures: Essays on the Literary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FAT 87 (Tübingen: Mohr Siebeck, 2013), 253-254; J. Stackert, *Deuteronomy and the Pentateuch*, 45-47.

53) T. 베이올라, 『베이올라 신명기』, 499-524; J. Pakkala, *Intolerant Monolatry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Helsinki: Finnish Exegetical Society, 1999), 3-25; P. E. Dion, “Deuteronomy 13: The Suppression of Alien Religious Propaganda in Israel during the Late Monarchical Era”, B. Halpern and D. W. Hobson, eds., *Law and Ideology in Monarchic Israel*, JSOTSup 124 (Sheffield: JSOT, 1991), 156-159. 참조, C. Levin, *Re-Reading the Scriptures: Essays on the Literary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252-256; T. Veijola, “Wahrheit und Intoleranz nach Deuteronomium 13: Lothar Perlitt zum 65. Geburtstag”, 287-314, 특히 292-293.

54) T. 베이올라, 『베이올라 신명기』, 504-506.

라, 신명기 12장 내의 각 문학 단위 사이의 관계를 본문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기존의 지배적 견해와 달리, 신명기 11:31-12:12가 12:13-28보다 앞선 본문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11:31-12:12가 더 앞선 본문이라면, 12:13-18 혹은 12:13-28만을 원신명기로 보던 관점에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본 연구는 11:31-12:28 전체가 원신명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원신명기에 대한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원신명기에 속한 성소 중앙화법은 모세 전승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원신명기를 재구성할 때, 모세 전승 내러티브 부분을 이차적인 것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 둘째, 신명기 13장을 원신명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어진다. 성소 중앙화뿐만 아니라, 배타적 야훼 숭배도 원신명기에 포함된 신학으로 보아야 한다. 이 두 가지 함의는 원신명기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많은 연구가 원신명기를 매우 소수의 본문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위에 언급한, 원신명기에 내러티브 틀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 학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모세의 목소리와 광야 배경을 신명기 4:45를 통해 인정하는 학자들조차 내러티브와 관련된 본문을 최소로 제한하려고 한다.⁵⁵⁾ 하지만, 원신명기의 법이 모세의 목소리, 광야, 약속의 땅 같은 내러티브적인 요소(특히 12:2-12)를 포함한다면, 신명기의 가장 첫 번째 편집본을 짧은 조약 문서 양식으로 가정하고, 법률에 나타나는 내러티브 요소에 상응하는 내러티브 도입부를 가능한 한 축소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⁵⁶⁾

55) 예를 들어, C. Levin, *Re-Reading the Scriptures: Essays on the Literary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253-254; A. D. H. Mayes, *Deuteronomy*, 48; M. 로제, “신명기”, 422; N. MacDonald, “Issues in the Dating of Deuteronomy: A Response to Juha Pakkala”, 431-435; T. 베이올라, 『베이올라 신명기』, 3-4, 223.

56) 쿠에넨(A. Kuenen)과 드라이버(S. R. Driver)를 포함해, 많은 19세기 성서학자들이 이미 법과 내러티브 간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하고 적어도 신 5-11장의 상당 부분을 원신명기에 포함했다. 참조, A. Kuenen, *An Historico-Critical Inquiry into the Origin and Composition of the Hexateuch (Pentateuch and Book of Joshua)*, P. H. Wicksteed, trans., (London: Macmillan, 1886), 112-117; S. R. Driv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Deuteronomy*, 3rd ed., ICC (Edinburgh: T&T Clark, 1902), lxx-lxxiii (특히 lxxvi와 거기 달린 각주에 나온 참고문헌들을 보라). 이에 반해 J. Wellhausen,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 und der historis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Berlin: Druck und Verlag von Georg Reimer, 1899), 186-208은 내러티브를 제외한 신 12-26장의 법 모음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법률들을 원신명기로 규정했다. 참조, R. Smend, “The Graf-Kuenen-Wellhausen School”, J. S. Baden and J. Stackert,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Pentateu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153. 신명기 법과 내러티브의 관계에 관한 보다 최근의 주장은 J. Stackert, *Deuteronomy and the Pentateuch*, 15-51을 참조하라.

<주제어>(Keywords)

신명기 12장, 성소 중앙화, 원신명기, 신명기 역사, 오경.

Deuteronomy 12, Cultic centralization, *Urdeuteronomium*, Deuteronomistic History, Pentateuch.

(투고 일자: 2024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4년 2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4월 15일)

<참고문헌>(References)

- 로제, M., “신명기”, T. 뢰머 외, 『구약성경입문 1』, 김건태 역, 경기도: 수원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9, 416-437.
- 뢰머, T., 『신명기역사서 연구: 사회학적, 역사적, 문학적 개론』, 김경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 뢰머, T., “신명기계 역사”, Th. 뢰머 외, 『구약성경입문 1』, 김건태 역, 경기도: 수원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9, 445-469.
- 베이올라, T., 『베이올라 신명기』, 원진희 역, 서울: 동연, 2010.
- 오택현, “신명기 역사에 나타난 예루살렘 선택구절 연구”, 『신학과 목회』 46(2016), 95-115.
- 이영미, “제의 중양화와 세속화를 통한 개혁: 신명기 12장의 수사비평적 읽기”, 『신학사상』 143(2008), 65-96.
- 이은우,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29(2008), 67-86.
- 이은우, “신명기와 전기 예언서의 관계에 관한 최근의 연구 동향”, 『성서마당』 85(2008), 65-78.
- 주옹, P., 무라오까, T., 『주옹-무라오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개정본, 서울: 기혼, 2022.
- 채홍식, “계약법전과 원신명기”, 『구약논단』 9(2000), 63-89.
- 최종원, “신명기 연구의 어제와 오늘”, 『기독교사상』 727(2019), 20-30.
- 허신욱, “신명기 연구 동향”, 『성서마당』 115(2015), 60-73.
- Albertz, R.,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J. Bowden, trans., 2 vols.,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4.
- Braulik, G., *The Theology of Deuteronomy: Collected Essays of Georg Braulik*, U. Lindblad, trans., BIBAL Collected Essays 2, N. Richland Hills, TX: BIBAL Press, 1994.
- Chavel, S., “The Literary Development of Deuteronomy 12: Between Religious Ideal and Social Reality”, T. B. Dozeman, K. Schmid, and B. J. Schwartz, eds., *The Pentateuch: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urrent Research*, FAT 78, Tübingen: Mohr Siebeck, 2011, 303-326.
- Crüsemann, F., *The Torah: Theology and Social History of Old Testament Law*, A. W. Mahnke, trans., Minneapolis: Fortress, 1996.
- Dion, P. E., “Deuteronomy 13: The Suppression of Alien Religious Propaganda in Israel during the Late Monarchical Era”, B. Halpern and D. W. Hobson, eds., *Law and Ideology in Monarchic Israel*, JSOTSup 124, Sheffield: JSOT, 1991, 147-216.
- Dozeman, T. B., Schmid, K., and Schwartz, B. J., “Introduction”, T. B. Dozeman,

- K. Schmid, and B. J. Schwartz, eds., *The Pentateuch: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urrent Research*, FAT 78, Tübingen: Mohr Siebeck, 2011, XI-XVIII.
- Driver, S. 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Deuteronomy*, 3rd ed., ICC, Edinburgh: T&T Clark, 1902.
- Fishbane, M.,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1985.
- Halpern, B., “The Centralization Formula in Deuteronomy”, *VT* 31 (1981), 20-38.
- Kratz, R. G., *The Composition of the Narrative Books of the Old Testament*, J. Bowden, trans., London: T&T Clark, 2005.
- Kratz, R. G., “The Headings of the Book of Deuteronomy”, K. Schmid and R. F. Person, Jr., eds., *Deuteronomy in the Pentateuch, Hexateuch, and the Deuteronomistic History*, FAT 2.56 (Tübingen: Mohr Siebeck, 2012, 31-46.
- Kuenen, A., *An Historico-Critical Inquiry into the Origin and Composition of the Hexateuch (Pentateuch and Book of Joshua)*, P. H. Wicksteed, trans., London: Macmillan, 1886.
- Levin, C., *Fortschreibungen: Gesammelte Studien zum Alten Testament*, BZAW 316, Berlin: Walter de Gruyter, 2003.
- Levin, C., *Re-Reading the Scriptures: Essays on the Literary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FAT 87, Tübingen: Mohr Siebeck, 2013.
- Levinson, B. M., *Deuteronomy and the Hermeneutics of Legal Innov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Lohfink, N., “Fortschreibung? Zur Technik von Rechtsrevisionen im deuteronomischen Bereich, erörtert an Deuteronomium 12, Ex 21,2-11 und Dtn 15,12-18”, T. Veijola, ed., *Das Deuteronomium und seine Querbeziehungen*, SESJ 6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127-171.
- Lohfink, N., *Die Väter Israels im Deuteronomium: Mit einer Stellungnahme von Thomas Römer*, OBO 11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1.
- MacDonald, N., “Issues in the Dating of Deuteronomy: A Response to Juha Pakkala”, *ZAW* 122 (2010), 431-435.
- Mayes, A. D. H., *Deuteronomy*, NCB,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79.
- McBride, S. D., “The Deuteronomic Name Theology”,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69.
- Mettinger, T. N. D., *The Dethronement of Sabaoth: Studies in the Shem and Kabod Theologies*, F. H. Cryer, trans., ConBOT 18, Lund: Gleerup, 1982.

- Morrow, W. S., "The Arrangement of the Original Version of Deuteronomy According to Eckart Otto", *ZABR* 25 (2019), 195-206.
- Nelson, R. D., *Deuteronomy: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2.
- Noth, M.,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SOTSup 15, Sheffield: JSOT Press, 1981.
- O'Brien, M. A., *The Deuteronomistic History Hypothesis: A Reassessment*, OBO 9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 Otto, E., *Das Deuteronomium im Pentateuch und Hexateuch: Studien zur Literaturgeschichte von Pentateuch und Hexateuch im Lichte des Deuteronomiumrahmens*, FAT 30, Tübingen: Mohr Siebeck, 2000.
- Otto, E., *Das Deuteronomium: Politische Theologie und Rechtsreform in Juda und Assyrien*, BZAW 284, Berlin: Walter de Gruyter, 1999.
- Otto, E., "Vom Rechtsbruch zur Sünde: Priesterliche Interpretationen des Rechts", L. A. Schökel, M. Beintker, and I. Baldermann, eds., *Sünde und Gericht*, JBTh 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4, 25-52.
- Pakkala, J., "Deuteronomy and 1-2 Kings in the Redaction of the Pentateuch and Former Prophets", K. Schmid and R. F. Person, Jr., eds., *Deuteronomy in the Pentateuch, Hexateuch, and the Deuteronomistic History*, Tübingen: Mohr Siebeck, 2012, 133-162.
- Pakkala, J., *Intolerant Monolatry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Helsinki: Finnish Exegetical Society, 1999.
- Pakkala, J., "The Date of the Oldest Edition of Deuteronomy", *ZAW* 121 (2009), 388-401.
- Pakkala, J., "The Dating of Deuteronomy: A Response to Nathan MacDonald", *ZAW* 123 (2011), 431-436.
- Richter, S. L., *The Deuteronomistic History and the Name Theology: l'šakkēn š'mô šām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BZAW 318, Berlin: Walter de Gruyter, 2002.
- Rofé, A., "The Strata of the Law About the Centralization of Worship in Deuteronomy and the History of the Deuteronomic Movement", *Deuteronomy: Issues and Interpretation*, Edinburgh: T&T Clark, 2002, 97-101.
- Römer, T., "The Book of Deuteronomy", S. L. McKenzie and M. P. Graham, eds., *The History of Israel's Traditions: The Heritage of Martin Noth*, JSOTSup 18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178-212.
- Römer, T. C., "Cult Centralization in Deuteronomy 12: Between Deuteronomistic

- History and Pentateuch”, E. Otto and R. Achenbach, eds., *Das Deuteronomium zwischen Pentateuch und Deuteronomistischem Geschichtswerk*, FRLANT 20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168-180.
- Römer, T. and de Pury, A., “Deuteronomistic Historiography (DH): History of Research and Debated Issues”, T. Römer, A. de Pury, and J.-D. Macchi, eds., *Israel Constructs its History: Deuteronomistic Historiography in Recent Research*, JSOTSup 30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24-141.
- Rüterswörden, U., “The Place of Deuteronomy in the Formation of the Pentateuch”, J. S. Baden and J. Stackert,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Pentateu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276-296.
- Schmid, K., “Has European Scholarship Abandoned the Documentary Hypothesis? Some Reminders on Its History and Remarks on Its Current Status”, T. B. Dozeman, K. Schmid, and B. J. Schwartz, eds., *The Pentateuch: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urrent Research*, FAT 78, Tübingen: Mohr Siebeck, 2011, 17-30.
- Seitz, G., *Redaktionsgeschichtliche Studien zum Deuteronomium*, Stuttgart: Kohlhammer, 1971.
- Smend, R., “The Graf-Kuenen-Wellhausen School”, J. S. Baden and J. Stackert,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Pentateu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143-164.
- Sommer, B. D., “Dating Pentateuchal Texts and the Perils of Pseudo-Historicism”, T. B. Dozeman, K. Schmid, and B. J. Schwartz, eds., *The Pentateuch: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urrent Research*, FAT 78, Tübingen: Mohr Siebeck, 2011, 85-108.
- Stackert, J., *Deuteronomy and the Pentateuch*, AYBR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22.
- Veijola, T., “Wahrheit und Intoleranz nach Deuteronomium 13: Lothar Perlitt zum 65. Geburtstag”, *ZThK* 92 (1995), 287-314.
- Von Rad, G., *Deuteronomy: A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1966.
- Wellhausen, J.,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 und der historis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Berlin: Druck und Verlag von Georg Reimer, 1899.

<Abstract>

**Deuteronomy without Moses?:
Rethinking *Urdeuteronomium* through the Analysis of Deuteronomy 12**

Sun Bok Ba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o-called *Urdeuteronomium*, considered to be the earliest layer of the Book of Deuteronomy or the Deuteronomistic History. As the existence of *Urdeuteronomium* is a hypothesis based on inference, scholars have presented diverse opinions on this matter. The contested areas primarily concern the scope and nature of *Urdeuteronomium*. The prevailing trend in academia perceives *Urdeuteronomium* as a very brief document that strips away the voice of Moses or the wilderness narrative, forming the current structure of Deuteronomy, and attributes the direct command for centralization of the sanctuary to Yahweh. Building on Simeon Chavel's thought-provoking and persuasive analysis of Deuteronomy 12, this study accepts his argument that Deuteronomy 12:2-12 represents the earliest editorial layers within Deuteronomy 12. Considering that most scholars include Deuteronomy 12:13-19 in *Urdeuteronomium*, this new analysis of Deuteronomy 12 suggests that the entire Deuteronomy 12:2-28 is included in *Urdeuteronomium*. These conclusions shed some light on the nature and scope of *Urdeuteronomium*, and this study highlights a couple of implications. Firstly, there is no such *Urdeuteronomium* that lacks the narrative framework of Moses' voice, the journey through the wilderness, and the vision of the Promised Land. Secondly, the inclusion of Deuteronomy 12:2-7 in *Urdeuteronomium* lends greater credibility to the idea that Deuteronomy 13 is part of *Urdeuteronomium*. These two implications suggest that there is no compelling reason to exclude narrative elements from the earliest version of Deuteronomy, and that there is no need to overly restrict the length of *Urdeuteronomium*.